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19-185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급교체 등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고등학교장
재 결 일 자 2020. 2. 17.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9.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급교체 등』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 학생으로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인 ○○○(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학교폭력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2019. 11. 1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 심의결과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학급교체’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및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9. 11. 11. 이 사건 처분을 알고 이에 불복하여 2019. 11.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처분의 부정확성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서에 의하면, 조치원인에는 2호 및 7호 처분 이외에도 5호의 조치를 한 것처럼 보이나, 같은 문서 조치사항에는 2호 및 7호 처분만 기재하고 있는바 그 처분의 내용도 부정확하다.

나. 제2호 처분의 부당성

이 사건 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보면, 2호 처분은 청구인의 부모가 피해학생과 연락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수소문한 것을 두고 청구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 내지는 보복행위를 할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서 청구인은 이전부터 수차 사과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인 만큼, 청구인이나 그 보호자가 그 피해학생에 대한 2차 위해를 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의 행위에 대해 심각성이나 고의성과 관련해서 보통이라고 판단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

다. 제7호 처분의 부당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정한 각각의 판정점수에 대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처분의 부정확성에 관하여

이 사건 통지서에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조치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부가적 조치이며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조치사항에 대해 혼란을 준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문과 정정된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제2호 처분의 부당성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위원회는 청구인의 보호자가 피해학생 측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자 했던 행위가 피해학생에 대한 위협이나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지속적인 놀림과 조롱, 청구인의 보호자가 피해학생 측의 개인정보를 알아보려고 한 일 등으로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상황이라서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2호 조치를 내린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호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학년 8반 교실에 빈번하게 출입하고 있어 피해학생 측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민원은 담임교사를 통해 사실임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행동은 2호 조치가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 제7호 처분의 부당성의 주장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정한 각각의 판정점수에 대하여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없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조레나 수업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는 것에 대하여 잠만 자고 공부도 못한다고 말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손가락으로 머리를 마는 행동을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피해학생을 쳐다보며 따라하거나 이상한 표정을 짓기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지구과학 수행평가 점수가 낮은 것과 피해학생이 일본어 시간에 컨닝하여 0점 처리된 사실에 대하여 조롱하였다.

라. 피해학생이 영어시간에 무단결석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탈주할 거야”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학생을 조롱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계속 조롱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부정확성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서에 의하면, 조치원인에는 2호 및 7호 처분 이외에도 5호의 조치를 한 것처럼 보이나, 같은 문서 조치사항에는 2호 및 7호 처분만 기재하고 있는바 그 처분의 내용도 부정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원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호 및 7호 처분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 사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통지서에도 조치사항에 2호 및 7호 처분을 한 것으로 나와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및 제9항에 의하면 2호 및 7호 처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적 조치로서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2호 및 7호 처분과 그에 따른 부가적 조치인 학생과 부모에게 각각 5시간의 특별교육이수를 명확히 명한 것(따로 청구인에게 5호 처분을 한 것은 아님)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처분의 부정확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동법 제3조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 (2)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가한 횡수나 방법, 내용에는 다름이 있지만, 피해학생에게 조롱행위 등의 모욕한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학생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학생은 청구인의 행위에 의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음이 분명한 만큼,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제2호 처분의 부당성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보면, 2호 처분은 청구인의 부모가 피해학생과 연락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수소문한 것을 두고 청구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 내지는 보복행위를 할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서 청구인은 이전부터 수차 사과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인 만큼, 청구인이나 그 보호자가 그 피해학생에 대한 2차 위해를 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행위에 대해 심각성이나 고의성과 관련해서 보통이라고 판단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수차례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나, 피해학생은 청구인의 사과를 진정어린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청구인과 피해학생 간에 화해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청구인의 행위가 아닌 청구인의 부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학원과 학교 상급생을 통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과 관련하여 피해학생은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청구인과의 접촉을 두려워하며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청구인에게 학급교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계속 종전의 학급교실에 출입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학생은 청구인으로부터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협박이나 보복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청구인을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접촉하게 하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2차 피해를 입게 하거나 현재의 피해를 가중하게 할 위험이 있고,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학생을 조롱하였던 점을 보면 추후에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협박 또는 보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기에 이 사건 처분 중 2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제7호 처분의 위법성에 관하여

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정한 각각의 판정점수에 대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수차례 사과를 하였다고 하지만, 이 사건 위원회에 출석하여 3차례만 조롱행위를 하였다고 축소하여 인정할 뿐, 나머지 가해사실은 인정하지 않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가 의문이고, 청구인과 그 부모의 수차례 사과에도 피해학생과 그 부모는 만남 조차를 거절하며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만큼, 앞으로도 청구인과 피해학생 간의 화해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청구인의 행위는 일회적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차례 피해학생을 괴롭혔고 피해학생은 청구인에게 계속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계속 피해학생을 괴롭혀 왔던 만큼,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들이 청구인의 학교폭력에 대한 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만한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아서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